
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, 운송수단 운영 등 관계 행정 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함(안 제5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